

지진보험의 쟁점

전 우 현*

차 례

- I. 서 론
- II. 지진에 대한 외국의 보험처리
 - 1. 터키의 지진보험
 - 2. 일본의 지진보험
 - 3. 뉴질랜드의 지진보험
- III. 지진보험 계약의 쟁점
- IV. 결 론

I. 서 론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의 규모는 거대화되고 그 피해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과 위도 경도상 위치로 인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여건 속에 있다. 그리하여 각 계절마다 각각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봄에는 황사와 가뭄이 있고 여름에는 풍수해, 가을에는 산불, 겨울에는 설해로 인해 재산과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¹⁾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전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접수일자 : 2012. 4. 30 / 심사일자 : 2012. 6. 18 / 게재확정일자 : 2012. 6. 22

1) 넓은 평야가 있는 곳(서울, 경기 북부, 전라 남도, 부산 등)에서는 호우 재해가 많이

의 이상기후 변화로 규모가 더 예측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속출하고 그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 또한 비주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정부위주의 행정조치가 주조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시스템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다. 자연재해대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없고 소방방재청, 건교부, 기상청 등 여러 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사후구조가 어렵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소비되며, 시간이 갈수록 그 효율성과 재건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²⁾ 정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매년 수 조원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손해보전비를 인상하고 손해보전 대상 가구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더우기 자발적인 재해예방과 복구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³⁾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국가의 재정으로 모두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보전에 대해 제3의 방안이 나와야 할

발생한다. 반면 산간지역의 경우 여름철에는 집중 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 아래 쪽의 집과 논밭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고, 겨울철에는 폭설로 눈사태가 발생한다. 해안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아 해안가의 배들이 파손되고 건물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는다. 또,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 큰 피해의 원인이다. 도서 지역을 보면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선박이 파손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울릉도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 주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생산과 민간 소비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시장에 교란이 발생하고 건설업의 공기(工期)지연은 인건비, 콘크리트 조달비용 등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수송 부문에 있어서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운행이 어려워져 교통비용이 커지고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통상 마찰과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킨다(유문현·조승국, “자연재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태풍 피해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24권 제3호, 2010. 9, 274쪽 참조).

3) 이재은/양기근,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감독체계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9, 1쪽.

때이다. 재난에 대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는 민간인 스스로가 사전대비, 사후수습하는 노력을 우선하면서도 민간보험 등의 방법으로 손해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진보험에 대한 논의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유라시아 판과 환태평양 판이 직접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에 심대한 영향을 준 바가 없고 지진이 발생한 과거의 예에서도 그 피해가 심대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최근 빈발하고 그 강도 또한 작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소 등 지진으로 인한 대형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진보험의 틀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주요시설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의무보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피해에 대한 민간보험처리를 제안하고 그 쟁점을 다룬다. 우선 지진에 대한 외국의 보험처리를 살펴보고 지진보험을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할 경우의 보험계약상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지진에 대한 외국의 보험처리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에 유용한 외국의 보험계약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진이 빈발하는 터키, 일본, 뉴질랜드의 보험례를 검토한다.

1. 터키의 지진보험

터키의 지진보험은 제3세계의 지진 보험으로는 대표적이어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터키에서는 1999년 연이어 두 번의 대형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특히 강제적 지진보험 가입에 대한

4) 근본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가 아니라도 사회의 현실은 개인의 투쟁, 사회집단간의 투쟁, 전쟁의 위험 등이 상존하여서 사고가능성(리스크)이 항상 존재하기에 그에 대한 대비는 보험제도일 수 밖에 없다(本間照光, 保險の社會學—医療·くらし·原發·戦争, 勁草書房, 2010.4, 192~193쪽).

거부감도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터키는 유럽에서 최초로 의무지진보험을 도입하는 국가가 되었다.⁵⁾

(1) 보험사고,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의 최고한도

터키의 지진보험은 오로지 지진위험만 단일하게 담보하는 보험이다. 그리하여 홍수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지진보험의 구체적인 담보위험 즉 보험사고는 지진위험과 지진으로 인한 화재폭발, 산사태 손해이다.

지진보험의 목적은 등록된 주택과 주거용 건물, 정부지원 대출로 건축된 주택이다. 그리하여 동산은 담보되지 않는다.⁶⁾ 지진보험의 보험가액에는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진보험의 최고보험금액은 건당 약 8만 달러이다.⁷⁾ 지진보험에 있어서 그 보장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다른 민영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⁸⁾ 보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계약자가 (자기)부담하도록 했다.⁹⁾

(2) 보험료, 보험계약기간

터키에서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은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보험목적은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5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지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1지역이고 그 넓이는 국토의 49.2%를 차지한다. 두번째로 지진위험도가 높은 2지역은 25.9%, 세 번째인 3지역은 8.7%, 4지역은 15.5%, 그리고 가장 위험도가 낮은 5지역은 0.7%의 면적을 갖고 있다. 보험료는 매년 건물신축가격의 상승에 비례하여 인상하도록 하였다.¹⁰⁾

지진보험요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신동호, “터키의 지진보험 연구 및 시사점”, 「산업과학연구」 제22권, 2009, 2쪽.

6) 신동호, 위의 논문, 4쪽.

7) Durukal, Erik & Sestetian, K., Turkish Compulsory Earthquake Insurance, Geographical Research Abstracts, Vol.11, EGU 2009~6648, EGU General Assembly, 2009, p.14.

8) 신동호, 앞의 논문, 4쪽.

9) 신동호, 앞의 논문, 5쪽.

10) 신동호, 앞의 논문, 5쪽.

[지진보험 요율]

(단위: %)

건축 형태	지진위험 1지역	지진위험 2지역	지진위험 3지역	지진위험 4지역	지진위험 5지역
철근, 강화 콘크리트	2.20	1.55	0.83	0.55	0.44
벽돌	3.85	2.75	1.43	0.60	0.50
기타	5.50	3.53	1.76	0.78	0.58

자료출처: Yucemen, Semih,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TCIP): Contributions to Risk Awarenes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al Education, 2007, p.7.

보험료는 건축구조물과 지진 위험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예를 들어 지진위험 1지역에 위치한 100m² 주택의 보험료는 철근,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연간 60달러이고 벽돌구조물은 74달러, 기타 구조물은 57달러로 규정되어 있다.¹¹⁾

[100m² 규모의 주택 지진보험 보험료]

건축구조물 형태	지진위험 1지역	지진위험 2지역	지진위험 3지역	지진위험 4지역	지진위험 5지역
철근, 강화 콘크리트	60\$	42\$	23\$	15\$	12\$
벽돌	74\$	53\$	28\$	12\$	10\$
기타	57\$	37\$	18\$	8\$	6\$

자료 : Gurenko, Eugene, N., Building Effective Public Partnerships: A Case Study of the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in Insurance Instruments for Adaptation to Climate Risks, Expert Meeting, Vienna, Austria, Sep. 24, 2006, p.9.

그리고, 지진보험은 보장성보험만으로 운영되고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11) 신동호, 앞의 논문, 5쪽.

(3) 계약체결의 방식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이하 TCIP)

터키에서의 지진보험자인 TCIP이다. TCIP는 지진보험을 직접 계약하지 않고 민간의 보험회사에게 이를 위임한다. 그리하여 위임을 받은 민간보험회사와 보험 대리점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취한다.¹²⁾

(4)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

터키에서 지진 보험이 2000년에 도입된 이후 8년 동안 지진발생은 총 157건, 보험금 청구건수는 총 9,062건이었다. 그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액의 총액은 17,810,000 YTL이었다. 매년의 기준으로 평균 20건의 지진이 발생하여 1,132건의 보험금청구가 있었다. 그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2,226,000 YTL이었다. 또, TCIP와 재보험계약에서 최대 15억 YTL의 보험금만 보장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터키 정부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¹³⁾ 터키에는 지진보험 사고 후 사고조사는 전문손해 사정회사에 위임하고 있다.¹⁴⁾

[터키의 지진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내용]

연도	지진 발생 수	보험금 청구 건수	지급 보험금(YTL)
2000	1	6	23,000
2001	17	338	127,000
2002	21	1,558	2,284,000
2003	20	2,504	5,204,000
2004	31	587	769,000
2005	40	3,481	8,039,000
2006	20	468	1,226,000
2007	7	120	138,000
합계	157	9,062	17,810,000

자료: Utkueri, Okan,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Garanti Sigorta Co., 2008, p.11.

12) TCIP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민간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은 이스탄불 등 수도권 지역은 12.5%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17.5%이다(신동호, 앞의 논문, 6쪽).

13) Yunak, Hueseyin, "An Example of Financial Protection Against Natural Disasters: TCIP", Issues Note of National Reinsurance Company, Turkey, 2005, p.3.

14) 신동호, 앞의 논문, 6쪽.

(5) 재보험 계약

터키의 지진보험에서 특히 큰 지진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거대재해 초과손해액 재보험계약(Catastrophe Excess of Loss Protection, Cat XOL)을 맺도록 한다.¹⁵⁾ 즉, 이 재보험계약은 비례재보험이 아니라 초과재보험방식이다. TCIP는 우선 터키의 모든 지역을 15개 지역으로 구분한 후 보험가액을 합산하여 각 구역에서 가입대상 25%의 주택이 지진 피해를 입는다는 전제하에 손해액의 최대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원보험의 대부분을 외국의 재보험회사에 가입하였다.¹⁶⁾

(6) 지진보험의 실제가입률

터키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2009년 기준으로 20% 정도이다. 지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되기 이전 임의보험이던 때에는 가입률 5%에 불과하던 것이 의무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가입률이 4배 정도 높아졌다. 터키는 의무지진보험 제도 이전에 존재하던 무이자 주택대출금 지원제도를 2001년에 들어서는 폐지했다.¹⁷⁾ 의무보험 방식에서 보험 가입률 20%는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소득수준, 지진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시 지나치게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는 점, 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조치 미흡 등이 꼽힌다.¹⁸⁾

이에 대한 터키정부의 대책은 (i)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 소유권을 관청에 등록할 때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ii) 가스, 전기, 수도, 전화의 개통시 그 신청서류에 보험 증권 첨부을 의무화하는 정도이다.¹⁹⁾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보조 정책을 논의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²⁰⁾

15) 신동호, 앞의 논문, 7쪽.

16) 신동호, 앞의 논문, 7쪽.

17) 신동호, 앞의 논문, 8쪽.

18) 신동호, 앞의 논문, 8쪽.

19) Yucemen, Semih,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TCIP): Contributions to Risk Awarenes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al Education, 7~8 May 2008, p.12.

20) 신동호, 앞의 논문, 9쪽.

(7) 시사점

터키의 경우 지진보험의 목적에 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 지진보험이 피해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도록 일부 자기부담하게 하는 장치는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함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하여 보험가입율을 제고한 것이 눈에 띄고 원보험의 대부분을 초과재보험 형식으로 재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이 된다. 다만, 이러한 선진적인 지진보험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수준, 자연재해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과 보험에 대한 저평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약한 제재는 지진보험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일본의 지진보험

(1) 일본의 지진보험 현황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보험법을 제정하여 지진보험을 적극 장려할 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의 노력도 법제화하고 있다.²¹⁾ 그리

21)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정비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1995년에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된 것) 제3조). 이는 1. 피난지, 2. 피난로, 3. 소방용 시설, 4. 소방활동이 곤란한 구역의 해소를 위한 도로, 5. 긴급수송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교통 관제시설, 헬리콥터 착륙장,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6. 공동하수구, 전선 공동매설지역 등의 전선, 수도관 등 공익물건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7. 의료법에 의한 공적부조 기관, 기타 의료기관 중 지진방재상 개축이나 보강이 필요한 것, 8. 사회복지시설 중 지진방재상 개축이나 보강이 필요한 것, 8의2. 공립유치원 중 지진방재상 개축이나 보강이 필요한 것, 9. 공립 소학교나 중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중등교육과정의 학교 중 지진방재상 개축이나 보강이 필요한 것, 10. 공립의 특별지원학교 중 지진방재상 개축이나 보강이 필요한 것, 11.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적 건조물 중 지진방재상 보강을 요하는 것, 12. 쓰나미에 의해 생긴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필요한 해안법상의 해안보전시설, 하천법상의 하천관리시설, 13. 사방법상의 사방시설, 삼림법상의 보안시설, 미끄럼등 방지법상의 미끄럼 방지시설, 급경사지붕괴 방지법상의 급경사지 붕괴방지 시설, 토지개발법상 농업용 배수시설에 있는 연못, 가옥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지진방재상 필요한 것, 14. 지진재해가 발생한 때 응급 대책거점으로 기능하는 지역 방재거점시설, 15. 방재행정 무선설비 기타 시설이나 설비, 16. 음료수, 전원 등의 확보를 위해 필

고, 지진방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특례를 두고 (지진방재특별조치법 제4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과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동법 제5조). 또, 사립의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교육과정과 특별지원학교의 유치부 등의 학교건물, 옥내운동장, 기숙사에 대해 재정금융상의 배려를 하게 하고(동법 제6조의 3), 문부과학성 산하에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를 두어 지진의 관측, 측량, 조사, 연구추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시책입안 등을 하도록 한다(동법 제7조).

일본에 있어서 지진보험의 보험사고는 지진분화나 쓰나미이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화재보험에서는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지진 후 화재에 의한 주택 손해, 쓰나미에서 주택이 유실된 경우, 침수한 경우, 분화에 의한 손해도 보상한다. 단, 일본에서의 지진보험은 화재보험과 함께 계약해야 한다. 물론 이미 화재보험만을 계약한 경우 지진 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도 가능하다.²²⁾

일본에서 지진보험의 목적은 거주용 건물이나 생활용 동산에 한한다(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약칭 지진보험법: 1966년에 제정되고 1999년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건물과 가재도구는 각각 계약의 목적으로 된다. 지진보험의 보험가액은 화재보험 보험가액의 30~50% 범위에서 설정하고 건물은 5천만엔, 가재도구는 천만엔을 한도로 한다. 내진(耐震) 건축물은 보험료가 최고 30%까지 할인된다. 내진등급에 따라 10%, 20%, 30%의 할인률이 적용된다. 현재 일본의 지진 보험 가입률은 아이치현, 도쿄도, 미야기현 순으로 높다.²³⁾

또, 일본정부는 지진보험의 재보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내용을 지진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재보험 계약의 당사자로서

요한 우물, 저수조, 수영풀장, 자가발전설비 기타 시설이나 설비, 17. 비상용 식량, 구조용 기자재 등 물자비축의 창고, 18. 부상자를 일시적으로 수용 보호하기 위한 구호설비 등 응급적인 조치에 필요한 설비나 기자재, 19. 노후주택 밀집지가에서의 지진방재대책이다.

22) <http://www.sonpo.or.jp/useful/insurance/jishin/>

23) http://www.sonpo.or.jp/webcatalog/campaign01/webt/wysiweb_win_viewer.html.

기능하고 사적인 보험기관(재보험회사)의 재보험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로써 지진에 관한 원보험계약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지진보험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1회의 지진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재보험금의 총액은 매년도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72시간 이내에 연이어 발생한 지진들은 하나의 지진으로 간주한다(동조 제3항과 4항). 그러나, 재보험계약상 보상금액이 재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재보험금액과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삭감한다(동법 제4조). 이는 지진의 성질상 재보험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진재해 경계선언이 발령된 때는 그 경계선언에 관계된 지역에 소재하는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는 경계선언이 발령된 때로부터 해제선언이 발령되기까지 정부의 재보험 계약에 관련된 지진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없다(동법 제4조의 2). 나아가 정부의 재보험에 관련된 지진 보험계약의 보험요율은 수지가 맞는 한 낮게 되어야 하고 정부의 재보험에 관한 보험요율은 장기적으로 재보험료 수입이 재보험금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다(제5조).

(2) 시사점

일본의 경우 지진의 예방에 관한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데 이는 지진빈발국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국가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본의 지진보험은 반드시 화재보험과 같이 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터키의 예와 달리 동산도 지진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험가액과 손해발생액의 평가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내진 건축물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정부가 지진보험의 재보험처리에 까지 관여하여 원보험계약을 활성화하는 노력은 지진보험 가입을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 지진이라는 대재난의 성질상 재보험금이 지나

치게 많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고려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이 된다.

3. 뉴질랜드의 지진보험

(1) 뉴질랜드의 지진보험 현황

뉴질랜드는 1948년 자연재해 및 전쟁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물의 피해에 대비해 국가는 펀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뉴질랜드 국회는 War & Damages Act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1988년에 이 법은 그 명칭을 Earth Commission Act로 바꾸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뉴질랜드에서 지진보험의 목적은 거주용 건물(주택)이다. 1988년 기준으로 보험료 총액이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뉴질랜드에서 이 지진보험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2011년 기준으로 1988년 금액의 3배 이상의 기금이 모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EQC(earthquake commission)는 피해복구 메뉴얼을 미리 준비하고 있고 재해발생시에는 그 메뉴얼대로 집행한다. 지진발생시에는 그 복구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복구관장기구(Recovery Authority)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⁴⁾ 뉴질랜드 지진보험의 특징은 첫째, 관 주도의 보험제도라는 것이고 둘째, 지진보험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정부와 보험사가 같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2) 시사점

뉴질랜드 지진보험의 목적은 터키에서와 같이 부동산(주택)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지진보험을 정부와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공동주도로 운영한다. 지진보험을 사적인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방임하지 않고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지진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4) <http://www.geonet.org.nz/earthquake/quakes/3652676g.html>.

Ⅲ. 지진보험 계약의 쟁점

자연재해보험 특히 지진보험계약의 사회경제적 효용성은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자치적인 보험금 보상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자연재해인 지진에 대해 보험계약으로 대처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²⁵⁾ 본 논문에서는 지진 등 대재해의 복구를 정부 등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의 자치적인 보험계약에 의거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연재해(특히 지진피해)를 민간 보험시장에서 담보하려면 지진과 지진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식변화 등 여건의 변화가 요구된다. 선진국은 태풍, 홍수, 지진 등 거대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의 경우 사영보험제도가 국가재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 국가가 직접 보험료를 보조하기보다는 민간보험시장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위험분산체계를 도모하는 형태이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보험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연재해보험(특히 지진보험)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재해복구비 지원정책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 국가예산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중요한 시사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은 WTO협정 체제하에서 직접 생산지원이 아니라 재해구호로서 허용되는 정책(Green Box)이기 때문에 농어업 직접보조금 축소 및 FTA에 의한 1차 산업의 경쟁력 하락 등에 대비하는 합법적인 지원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진이나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의

25) 자연과학에서의 유전자에 비유될 수 사회시스템은 지식 또는 노하우일 것이다. 이를 사회과학에서는 복제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복제자는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식 또는 노하우와 환경과의 사이에는 상호의존관계가 있다. 보험계약에서의 유전자적 요소에 대해서는 제도, 기술, 행동, 상품 등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堀田一吉/石田成則/岡村國和, 保險進化と保險事業,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6.5, 6~7쪽). 이러한 보험적 요소가 지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지진 위험을 대비하는 사회적 수단으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실적인 위험이 아니라도 원자력발전소와 해안에 인접한 산업시설,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공장 등은 지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기존 약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진보험상 보상기준과 면책사유, 보험금지급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진에 취약한 지역, 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진보험에 의한 대재해 보상처리를 제안하는 본 논문의 취지상 다음과 같이 지진보험상 구체적인 쟁점을 논한다.

(1) 보험사고

우리나라에서 지진보험 등을 새로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²⁶⁾ 지진의 발생 빈도, 지진의 강도 등에 있어서 유사한 단위로 세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물의 위험도를 세분하여 측정하면 그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다. 즉 위험의 분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대수법칙을 적용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리고 특히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는 위험을 너무 세분하면 통계의 모집단이 너무 작아진다. 이 점에서는 인접학문인 건축공학, 전기공학, 기상학, 자동차공학, 지질학 등의 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보험 중 풍수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정하고 있어서(풍수해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참조) 지진 피해, 화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들 피해(특히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약관이 정해져야 한다.²⁷⁾ 향후 기후변화나 지각활동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보험사고의 일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고 현재에도 지진의 위험이 높은 지역과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약

26) 위험과 위험공동체를 어떻게 보험단체성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Deutsch, *Das neue Versicherungsvertragsrecht*, VVW, 2008, S. 9.

27) 이에 관해 특히 유념할 것은 all risks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지진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Barlow Lyde and Gilbert, *Insurance Law Handbook*, Tottel Publishing; 4th edition (2008), 213.; Emeric Fischer/Peter Nash Swisher/Jeffrey Stempe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I, II*(Revised Third Edition), Lexis Nexis, 2006, p.607).

관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추가담보될 수 있다.²⁸⁾

그런데 보험사고인 자연재해(지진)가 발생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가 문제이다. 자연재해보험 중 풍수해보험에서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다만, 이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면 피해가 심각한 경우임에도 기상특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때가 생길 것이므로 그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서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 약관 제2항).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자치구)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확인이 있는 경우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동 약관 제3항). 이는 지진보험에도 참고할 수 있다.

(2) 보험의 목적

지진보험의 목적은 개개의 물건으로 할 수도 있고(개별보험) 집합된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집합보험). 지진보험을 집합보험 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집합물건 전체를 하나로 보아 보험계약을 맺는 경우와 집합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계약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보험 목적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한다. 집합보험 중 특정보험에서 농가의 물건이나 공장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28)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는 보험이 많이 발달할 수 밖에 없다. 최근의 새로운 보험으로서의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보험, 인터넷 화를 활용하는 보험 등이 있다(山野嘉朗/山田泰彦, 現代保險·海商法30講, 中央經濟社, 2010.4, 8쪽).

교체 변동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보험이건 집합보험이건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특정되어야 한다.²⁹⁾ 다만, 지진보험 등에서는 집합보험 중에서도 특정 보험보다는 총괄보험(일종의 예정보험)이 더 선호될 것으로 생각된다. 총괄 보험에서도 물건의 동질성은 유지되어야 한다.³⁰⁾ 생각건대,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 어떤 물건이 보험의 목적으로 되는가에 대하여는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약관과 보험증권상에서 그에 관해 이의의 여지가 없도록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지진보험의 목적은 부동산(주로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될 수 있지만, 보험목적의 특정, 지진발생시 손해입증의 어려움,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일체성 여부는 당사자간 쟁점이 될 수 있다.

첫째, 지진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앞에서 언급한 집합보험의 형태로 된다면 특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진보험에서는 자연재해 중 화재, 홍수보다 더 짧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목적의 대부분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동산과 동산 등 보험의 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³¹⁾

둘째, 지진보험에서는 화재보험이나 홍수보험보다 피해(손해)의 입증이 더 난해하다. 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을 보험회사 등 사적 기관이 조사하기가 쉽지 않고 공공기관의 사고조사보고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을

29) 피보험이익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도박 계약을 금지하고 고의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이다(Kenneth S. Abraham,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Foundation Press, 2005, 199).

30)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408쪽.

31) 보험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쟁점을 다룬 사례로는 부산지판 1987.6.23, 86가합3663: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증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용자명세표에 특정선원의 성명, 직업, 급료 등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보험약관에 보험회사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험증권의 내용을 폐기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소위 개별조항방식에 해당한다. 위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이 다른 선원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상에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서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위와 같은 경우, 설령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과 교체승선한 선원의 직업, 급료, 건강상태 등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동일하여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에도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것이다. 따라서 보험목적으로 기재된 재산목록이 피해내용의 주요한 근거로 될 수 있다.

셋째, 지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물(主物)은 보험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종물(從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민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2항)”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그 ‘처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학설은 주로 그 ‘처분’의 의미를 소유권의 양도나 물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 뿐만 아니라 매매·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³²⁾ 생각건대,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치는가에 관하여 구민법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현행민법에 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민법 제358조) 주물·종물의 이론을 물건간의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학설의 주류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진보험에서도 종물은 주물과 함께 하는 것으로 계약의 문언을 해석함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한편 분쟁예방을 위하여 지진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기재함이 옳다.

(3) 지진 등 자연재해 보험과 보험가액의 평가

지진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해두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의 가격평가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다만, 상법규정은 보험가액 산정의 시점만을 정하고 있어서 그 기준장소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 있다.³³⁾ 보험가액은 지진보험계약에 있어서도

32)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6, 305쪽;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315쪽;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303-4쪽;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427쪽;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1000쪽;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305쪽.

33) 보험가액 평가에 관한 분쟁조정례(1988.7.26, 88-62): “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건물구획별로 최대한 실사 및 계약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에 따라 물량을 산출한 후 정부노임 단가와 시중물가지세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경과 년수에 따라 감가 상각을 실시하여 손해액을 선정하였으므로 일응 이 건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의 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선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보험사고시 보험 회사의 보상한도가 되고 보험계약 성질의 판단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미평가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기평가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기평가보험에서도 보험계약체결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평가한 목적물의 가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시장가치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상법상으로는 당사자들의 보험가액 약정이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상법 제 670조 본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는 약정한 지진보험가액이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상법 제670조 단서) 때문이다.

그리고 지진보험 가액을 평가함에 주의할 점은 우선 지진 발생 당시나 그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액 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므로 그 지진 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과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는 데 따른 분쟁의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4) 의무보험의 문제

지진 등 자연재해의 보험을 완전히 임의보험계약에 맡겨둔다면 보험료 부담의 과중, 역선택의 가능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재난 보험을 임의보험 형태로 하는 예도 적지는 않으나 그 한계가 많다. 영국,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은 홍수,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위험을 화재보험 및 가정종합보험의 자연재해특약에서 담보하는데 이는 임의보험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도 화재보험 자연재해특약에서 홍수, 지진, 산사태를 위험에 따라 부분적으로 담보하거나,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여 보상하는 임의보험이다.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에서도 자연재해위험이 임의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반면, 자연재해위험을 조건부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³⁴⁾ 프랑스,³⁵⁾ 스페인,³⁶⁾ 스위스,³⁷⁾ 노르웨이,³⁸⁾ 덴마크³⁹⁾이다. 프랑스는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손해보험(가정종합보험, 자동차보

협)에서도 자연재해특약가입을 강제하고 있다.⁴⁰⁾

생각건대, 지금 당장 모든 보험목적에 대한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재난 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가게 부터 실시함이 바람직하다.⁴¹⁾ 미국의 경우 홍수재해방지법(the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1973, Section 202(a))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건물이나 개인재산은 홍수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인수의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대출, 증여, 보증, 보험, 지급, 리베이트, 보조, 재난보조기부를 승인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자연재해보험증권 모범규준’을 권고하여 대출자의 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홍수보험법(Flood Insurance Act) 제4012a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홍수위험지역의 주택과 건물에 대하여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한다. 나아가 1994년 개정된 국가홍수보험개혁법(the National Flood Insurance Reform Act)에서는 대금업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대출담보위험이 적정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홍수보험의 가입(force placement)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건물이 특별홍수위험지역(Special Flood Hazard Area, SFHA) 내에 위치하면, 대금업자 또는 서비스업자에게 건물에 대해 홍수보험을 가입하고, 채무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⁴²⁾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5) 보험료의 계산과 공적 지원

보험단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가진 계약자

34)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amended 1973, 1994).

35) 자연재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 1982.

36) Spanish Act 21 19th September, 1990/Royal Decree 2022 of 29th August, 1986.

37) Swiss Act of 20th March, 1992/Bundesrat Decree of 18th November, 1992.

38) Insurance Contracts Act of 16th June, 1989/Natural Perils Act of 16th June, 1989.

39) Danish Flood Damage Compensation Act of 6th June, 1991.

40) 신동호, 앞의 논문, 4쪽.

41) 같은 취지: 신동호, 앞의 논문, 9쪽.

42) §4012a. Flood insurance purchase and compliance requirements and escrow accounts

집단이 있어서 이들의 사고발생위험을 평균하여 보험요율을 계산해야 하는데⁴³⁾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그 통계가 확률적 예측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⁴⁴⁾ 또, 그 손해의 규모도 워낙 커서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에는 지나친 경우가 많다.⁴⁵⁾ 사고발생 후 손해액을 측정하는 손해사정(사고접수 및 피해사실의 확인, 피해규모의 정확한 산정 등)에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⁴⁶⁾ 또,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손해액수의 계산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의 명성이 훼손되는 예가 빈번하다. 그리하여 민영보험회사의 자연재해보험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보험료율을 개개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지 말고⁴⁷⁾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그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보험 종목별로 위험을 세분하여 각기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위험의 수를 많이 필요로 하면 통계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험요율은 일단 전체지역을 행정구역과 위험도에 따라 정하고 차등요

43) 보험계약에서의 사고가능성인 위험(리스크)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説, 生命保險·傷害疾病定額保險, 有斐閣, 2010.5, 35쪽). 특히 보험계약에 있어서 수지 상등의 원칙은 보험료 수입의 현가와 보험금 지급의 현가가 동일함을 요구한다(小暮雅一, 保險の數學—生保·損保·年金, 保險毎日新聞社, 2010.5, 22~23쪽).

44)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홍수피해 지도(홍수지도 등과 같은 형식)를 만드는 것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농촌, 어촌, 산간 지대인 경우 조사원이 충분한 조사를 하기에 어렵고 이러한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기능 또한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45) 이러한 점 때문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국영의 회사(보험공사)에서 자연재해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46) 현재 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사정의 대상은 주로 농촌의 시설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정과는 다르다는 점도 손해사정이 어려운 원인의 하나이다.

47) 지진보험에서도 어떻게 보험료를 결정하느냐가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이다. 모든 보험료 결정을 당사자들 합의만에 의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Pröl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C. H. Beck, 2010, S. 361). 그리고 지진보험에서는 전쟁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처럼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료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위험처럼 지진위험도 보험보상사 고로 되기 어렵다(Bruck & Möller, VVG, 9.Aufl, De Gruyter, 2010, S. 896).

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도입초기에는 자료의 불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아주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율을 산정할 때 일부 자기부담금제를 실시하여 위험방지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 손해보험의 순보험료의 요율은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과거의 손해에 관한 자료로부터 장래 발생할 손해를 예측하려는 것이어서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풍수해, 지진해 등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고 손해도 거액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서는 더욱더 원가 계산을 전 보험 상품에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가보험료의 적정한 산출은 보험료 구성상 중요하므로 경비계산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지진 등 자연재해보험에서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상승이라는 부담을 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재난의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충분히 지급할 수 없다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약관 제3조에서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제3항).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업자와 소방방재청이 맺은 풍수해보험 사업약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원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동 약관 제3조 제4항).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진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일부 영세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책임보험

자연재해에서 인간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법리는 손해분담의 공평한 처리에 있지만 불법행위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책임보험제도이다.⁴⁸⁾ 책임보험 중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은 의무보험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다.⁴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각각 산업재해와 어선관련 인적·물적 재해에 대해 국가적 지원(보험료 등)하의 보험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서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지진보험의 목적인 시설물의 소유나 관리상 하자가 다른 인적, 물적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보험 계약체결이 필요한데, 그 책임보험은 단독으로 체결되기보다 지진보험계약의 부가약관으로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7) 보험계약체결의 방식

일반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서도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모집인을 통한 방식 뿐만 아니라 홈쇼핑 전문사를 통해 보험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 도시와 달리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산간 지역, 농촌, 어촌의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저축성 보험으로 하여 3-5년의 보험기간 경과 후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연재해·재난시 여러 가지 위험이 혼재하므로 보험보상방식은 혼합적인 보상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람의 사망·상해나 후유장해, 건물의 파괴 등 물적 손해와 배상책임의 손해를 모두 담보하는 보상내용이 약관에 규정된다면 종합적 전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지진보험 중 재산보험의 경우에는

48) 이에 관해서는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382-3쪽;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595-6쪽; 김중환·김학동, 「채권각론」, 박영사, 2006, 777쪽;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733쪽; 서규석·이종순, “재난배상책임보험 도입론”, 「기업법연구」 제15집(통권 15호), 2003. 12, 228쪽 참고.

49) 일본의 재해관련 의무보험(강제보험)에는 선객배상책임보험, LP가스업자배상책임보험, 지방자치단체 종합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손해보험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하여 정액보험방식보다 실손보상방식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보험모집의 보조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법상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보험자에게 가입희망자의 청약서 전달 등의 사실행위 및 최초 보험료수령, 가수증 발급 권한 정도가 인정된다. 그리하여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체결권, 보험료납입유예권, 계약의 부활권, 해지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⁵⁰⁾ 특히 고지수령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⁵¹⁾ 건물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정형화된 보험이 아닌 지진보험의 경우에는 더욱 더 보험모집인이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 만약, 보험모집인이 지진보험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히 약관 내용과 달리 설명한 때에는 그 설명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다.⁵²⁾ 이는 보험모집인이 지진보험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그러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진보험을 보험대리점을 통해 체결한다면 그 계약대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기간이 짧고(보통 1년 이하)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의 계약대리권이 인정되지만(계약대리상) 보험기간이 길고 승낙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을 보험회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리권이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것(중개대리상)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의 소송대리, 청구의 승인, 손해액결정 등의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보험중개사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매개하는 자이지만 영미법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관습법이 형성되어 있다. 지진보험은 지진과 기타 자연재해보험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계약체결 방식도 전문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 이외

50)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18쪽.

51)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2005, 504-505쪽;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97쪽;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9, 529쪽.

52) 대판 1991.9.10, 91다20432 참조.

에 인터넷을 이용한 계약체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전자상거래방식이나 통신판매방식) 지진보험과 같은 전문적인 보험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

(8) 세제 지원과 역선택 방지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또는 저축성보험료의 일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기업인에 대해 특별지원을 한다면 소상공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⁵³⁾ 이는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보험목적으로 하고 그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⁵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는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수재특약의 경우 자연재해위험에 노출이 많은 기업들이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문제가 발생하여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는 곧 보험료 증가를 가져와 보험수요자의 가입 장벽이 되고 있다. 보험사는 자연재해위험이 높은 지역 및 계약자에 대해 풍수재특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공급이 제한되기도 한다. 민영보험사의 화재보험에서는 위험업종에 대하여 인수제한을 한다. 스티로폼제조, 스폰지제조, 펠트 및 부직포제조, 폴리우레탄폼 및 폼러버제조, 폐기물소각장 등이 인수

53) 소상공인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이 미약하므로(원가절감을 위해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예도 많다) 지원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일부의 정부지원으로도 자신의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4)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WTO의 허용보조 요건(농업협정 부속서2 제1항)을 충족하므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로 신동호, “자연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2007, 2쪽.

제한물건에 해당한다. 그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통상 보험금액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다시 보상한도액을 보험금액의 50% 정도로 설정하여 화재보험이 아닌 패키지보험으로 인수하는 등 보험조건을 변경하고 보험 보상액을 줄이는 것이 나올 것이다.

생각건대,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서도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실손보상을 하더라도 일정한 복구금액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일부 보험의 장려). 자기부담을 하게 하는 것⁵⁵⁾은 도덕적 위험을 억제함에 필요하고 자활의지를 격려하지 않는 재난대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9) 통지의무와 손해의 조사

보장범위가 같은(보장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을 계약하려 하거나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중복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⁵⁶⁾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 보통보험약관(제14조 제6항)은 그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험금지급거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상법의 개정으로 해소할 문제이다.

또,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즉시 통지하고⁵⁷⁾ 손해방지행위에 착수해야 한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급격하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55)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1등급 지역은 10%, 2등급은 20%, 3등급은 30%, 그리고 위험수준이 높은 상습침수지역의 4등급은 자기부담비율 5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피해주민의 설득을 위하여 사전홍보가 필요하고, 보험가입시 약관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신동호, 위의 논문, 18쪽).

56) 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 계약상의 의무이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라는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山野嘉朗, 保險契約と消費者保護の法理, 成文堂, 2007.6, 164頁 참조).

57) 화재보험과 같이 지진보험도 위험이 증가되었다면 계약자측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John Birds, Birds' Modern Insurance Law, Sweet & Maxwell; 7th edition, 2007, pp. 138~139 참조).

통지의무의 이행이 제때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진보험 약관에서 통지의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자측에서는 보험사고인 지진을 예의주시하고 보험목적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면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손해증가 여부, 손해 증가액, 통지해태와 손해증가의 인과관계 등에 있어서 분쟁여지가 많을 것이다. 이 분쟁과 관련하여 보험자측은 손해발생여부, 손해액, 사고통지 해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자측은 그에 협조할 의무를 져야 한다. 손해 발생 여부, 손해액에 대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허위사실을 통지하면 보험사기가 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한 상법 규정이 미비하고 보험사기에 관한 인식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풍수해보험 I 보통약관 제22조는 보험금 청구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 다만, 이 ‘고의’,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의 존재여부, ‘사실과 다른 사실’의 개념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여부, 보험금 지급액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기재라면 ‘사실과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범위에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고의가 아니라는 입증은 계약자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다. 다만, 이는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라 약관상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⁵⁸⁾ 생각건대,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의 손해를 신고하는 것은 고의로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하므로 이러한

58) 潘 阿憲, 保險法概說, 中央經濟社, 2010.7, 96~97頁.

약관은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10) 보험목적의 양도

지진보험 등 자연재난보험에서는 개인의 주거용 건축물, 상가, 공장 등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이 양도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변경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왔지만, 1991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이 점은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지진보험 등에서도 보험목적의 양수받은 사람은 지진보험 등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받게 된다. 다만, 이 상법상의 내용이 지진보험 등에 있어서 상당한 다툼의 여지를 줄 수도 있다.

생각건대,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은 추정적인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을 새로운 보험에 든 경우 종전의 보험관계도 승계된다면 중복보험의 문제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새로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자도 보험계약자가 제1 보험계약을 알리지 않고 체결하였으므로 중복보험을 내세워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양수인측이 승계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보험의 목적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할 수 있다고 본다.

(11)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보험상 면책사유를 정함에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보상하는 사고의 자연재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원인으로 인한 손해라면 면책사유가 되어야 한다⁵⁹⁾(예컨대, 지진보험의 경우 지진 이외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이다). 둘째, 자연재해가 아닌 전쟁, 내란,

59) 이와 같이 위험을 분류하여 특별히 큰 위험에 대하여 보상의 예외조항으로 하는 것은 통상적인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Carl Heymanns, 2009, S. 96).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라면 면책사유로 될 것이다. 셋째, 자연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이라면 손해보험 일반에서 인정되는 면책사유(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상법 제678조 참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면책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⁶⁰⁾ 이는 상법 제663조(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진보험은 화재보험, 홍수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 계약의 면책 사유인 지진 자체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통상적인 면책사유 중 고의·중과실 면책(exception)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담보배제사유(exclusion)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

통상적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에 내재한 사정이거나 필연적인 현상이어서 보험사고의 우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진보험에 있어서는 그러한 성질, 하자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면책은 거의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또, 손해보험계약에서 면책 사유가 될만한 다른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규정이 유효할 것인가는 지진보험계약의 성질, 보험료, 보험상품설계와 인가의 배경, 가입자의 기대수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지진보험 성립과 유지의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판례는 약정 면책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회통념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¹⁾

60) 지진보험에서는 화재보험과 같은 통상적인 보험처럼 보험사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유발여부는 거의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James Allan Park, A System Of The Law Of Marine Insurances, The Lawbook Exchange, 2005, pp. 441~442 참조).

61) 대판 1998. 4. 28, 97다11898: “동산종합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보험계약의 일부로 된 중장비추가약관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 위반이라는 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약관 소정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중장비추가약관상의 면책조항

생각건대, 면책사유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보험상품 내용이 부실해진다 면 이것도 문제이다. 보험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보험가입 결정이 상품의 가격 즉 보험료에 크게 영향받는다든 점 때문에 보장내용이 부실한 보험 상품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담고 면책사유를 함부로 많이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⁶²⁾

다른 손해보험 계약에서와 같이 지진보험에서도 그 면책사유에 관한 약관에 있어서 어떤 내용, 어떤 형식 즉 활자의 크기, 색깔에 관한 특별한 규제 형식이 없다. 그리하여 면책사유 여부에 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보험자는 이를 상법 제638조의 3의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구 상법에 규정되어 있던 소손해면책도 특약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2) 보험자대위와 그 포기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자 대위(특히 잔존물 대위)⁶³⁾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는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대상이 도로, 하천, 교량, 비닐 하우스, 농경지, 축사, 회사의 건물 등이 될 수 있는데 보험금 전액지급 후 이를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것이 성질상 부적당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곤란한 점에서 잔존물대위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 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무면허운전 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62) 이에 관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보험계약규제령(Insurance Contracts Regulations, 1985) 제35조에 의한 담보범위 표준화제도(standard cover)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63) 보험자 대위의 근거는 주로 윤리적인 이득금지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竹賓 修 外 2인, 保險法改正の論点, 法律文化社, 2009, 160~161頁).

(상법 제681조)는 별 효용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목적에 대한 잔존물대위가 반드시 보험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개항질서법 제18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박보험에서 보험목적인 선박이 내항에서 침몰하여 다른 선박의 항해를 방해한다면 선박의 권리자가 침몰선과 잔존물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잔존물대위를 한 결과 이런 부담을 추가적으로 지는 것은 보험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이 대위권을 언제 포기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위권 행사 포기의사를 보험금 지급 전에 미리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보험 약관에서 보험자 대위의 포기를 하는 방법은 (1)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 물건은 보험회사가 이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 (2) 보험회사에서 피해물건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는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는 방법, (3) 잔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된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⁶⁴⁾

(13) 보상방식과 보험금 지급 후의 보험계속

지진보험과 유사한 풍수해보험은 정액보험과 준실손보상 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즉, 보험가입비율을 50%, 70%, 90%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넓이가 50m²초과하는 주택은 기준단가(m²당)×(50~90)%×주택면적을 계산하여 준실손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이 모두 파괴된 경우가입금액의 50%~90%, 절반의 파괴는 50%, 그보다 낮은 정도로 파괴된 경우에는 25%가 지급된다. 농작물보험은 예상 수확량의 최대 70% 또는

64) 岡田豊基, 現代保險法, 中央經濟社, 2010.9, 219頁.

80%가 보상되고, 어선보험은 가입금액 한도에서 비례보상한다. 어선원보험은 요양, 상병, 일시보상, 장애, 유족,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가 주어진다.⁶⁵⁾ 이를 지진보험에도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지진 보험이 지속될 것인가? 지진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진 후에도 잔존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생긴다. 이는 특히 지진의 발생 결과 전손이 되지 않고 분손으로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⁶⁶⁾ 지진 발생 후 보험계약을 계속할 경우의 보험가액은 손해를 보상한 후 기존의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보험액(보상액)을 뺀 금액(잔액)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또,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보험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⁶⁷⁾ 지진보험에 있어서 특히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보험목적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분손이라면 보험사고인 지진발생 이후에도 보험료 계산 등 계산의 기초를 달리하여 보험금액을 잔존 보험가액을 한도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지진과 관련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 이후에도 보험금액을 자동 복원시켜(즉, 전액 복원)보험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진이라는 보험사고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4) 재보험의 경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사고가 예측할 수 없고 동시에 여러 보험목적에서 발생하며 그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보험사가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보험가입이 필요하다.⁶⁸⁾ 그런데 현재에는 재보험의

65) 신동호, 앞의 논문, 17쪽.

66) 지진발생으로 전손이 된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면 대체로 그 보험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이다.

67)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Carl Heymanns, 2009, SS. 1140~ 1141.

68) 지진보험이나 그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의 목적물은 사회적인 신용성을 인정받아 대

경우에도 보험목적에 따라 위험당 손해라는 방식을 취할 수 없고 비례적 재보험(손해율 재보험)방식을 취하므로 민간 재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보험에서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가지고 있다면 재보험자가 원수 보험자에게 보험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권은 재보험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지진 등의 결과로 생기는 잔존물에 대하여 외국에 소재한 재보험자의 경우 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불편하다. 그리하여 재보험자는 원수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대위권을 행사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다만, 재보험자가 대위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약정 즉 재보험 계약약관에서 미리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진보험에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의재보험을 할 것인지 특약재보험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지진보험에서는 먼저 특약재보험의 형태로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이로써 담보하기 어려운 위험을 임의재보험에 가입함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보험 가입실정을 보면 위험율이 낮은 원보험상품을 해외에 출재한 미숙한 출재 경향이 있었으나⁶⁹⁾ 재보험 기법의 발전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지진보험에 있어서는 원보험자의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재보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지진위험을 충분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초과손해액 재보험 방식으로 그 재보험을 인수하고 있다.⁷⁰⁾

그리하여 일본에서 지진 재보험회사와 정부는 초과 손해재보험특약을 체결하여 매월 각 원수보험자로부터 보고되는 목적, 구조, 지역별 계약통계를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피해정도에 적용, 예상손해액을 계산하여 정

출 등에서도 단연코 유리하게 취급된다(Tom Baker, Insurance Law and Policy: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Aspen, 2003, p.15).

69) 김성태, 앞의 책, 723쪽.

70) 일본 지진보험법 제3조 참조.

부와 보험자와의 위험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보험료를 계산하고 있다.⁷¹⁾

(16)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와의 관련

지진보험 중 손해보험에서는 항상 중복보상의 문제를 염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자간에 보험계약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⁷²⁾ 이를 악용하지 않는 범위에서(개인의 신용정보의 보호 등 전제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자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⁷³⁾

그리하여 지진보험을 중복보험으로 가입한다면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병존보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법적 효과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여기에 관해서는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험자측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이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으로 지진보험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진과 관련된 책임보험이라면 보험가액을 정할 수 없어서 중복보험이 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통지의무 부과 필요성은 여전하다.

71) 西原慎治, “日本の地震について”, 한국 비즈니스 리뷰 제4권 제2호, 2011. 8, 151~ 153頁.

72)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복보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적다. 그러나, 보험목적의 동일하고 보험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위험, 인위적 사고가능성 때문에 보험사업자간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이 점에서는 손해보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73) 그 공유대상 정보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의 계약내용,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V. 결 론

지진 등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의 위험 때문에 어떤 국가나 국민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또 그 피해의 대규모성과 심각함에 비추어 이를 대비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사전대비 못지않게 사후의 복구노력과 보험보상처리라는 차원높은 사회적 문제해결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어떤 재난이든지 그 피해자 스스로 손해를 방지하거나 사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율과 책임원리라는 근대적 이념에 가장 적합하다. 복구비의 완전 무상지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주민자신에 의한 손해방지노력을 해이하게 하는 문제가 따른다. 자율과 책임의 원리를 존중한다면 자연재해의 위험도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재해발생시 보험보상으로 손해전보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고가 예측할 수 없고 사고가 여러 보험목적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그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보험사가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보험계약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을 적극 장려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도덕적 위험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진 등 재해의 보험처리는 가장 바람직한 위험분산 장치이지만, 보험사기 등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임의 보험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의 자활, 자립의지를 강화·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보험계약체결이나 공제가입을 강제할 필요도 있다. 다만, 제도실시의 초기에는 보험료지급 등 약간의 과도적인 지원을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가계부터 그 보험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연재해 보험은 일반보험약관에 더하여 자연재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와 독립적인 자연재해 일반보험약관에 의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후자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립적 자연재해보험이 보편적

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전자의 형태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지진 등 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보조만으로 회복하려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지진보험 가입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서도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계약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모집인을 통한 방식뿐만 아니라 홈쇼핑 전문사를 통해 보험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약체결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도시와 달리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산간 지역, 농촌, 어촌의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저축성 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방식에 있어서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 중 재산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하여 정액보험방식보다 실손보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업인에 대해 특별지원을 한다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의 쟁점이 원만히 해결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대재난에 대한 대비를 민간보험제도로 처리하는 성숙한 피해보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6.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박영사, 2006.
-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2005.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9.
-
- 서규석·이종순, “재난배상책임보험 도입론”, 「기업법연구」 제15집(통권 15호), 2003. 12.
- 신동호, “자연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2007.
- 신동호, “터키의 지진보험 연구 및 시사점”, 「산업과학연구」 제22권, 2009.
- 유문현·조승국, “자연재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태풍 피해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24권 제3호, 2010. 9.
- 이재은/양기근,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감독체계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9.
-
- 岡田豊基, 現代保險法, 中央經濟社, 2010. 9.
- 堀田一吉/石田成則/岡村國和, 保險進化と保險事業,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6. 5.

- 本間照光, 保険の社會學—医療·くらし·原發·戰爭, 勁草書房, 2010. 4.
山野嘉朗, 保険契約と消費者保護の法理, 成文堂, 2007. 6.
山野嘉朗/山田 泰彦, 現代保険·海商法30講, 中央經濟社, 2010. 4.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険法解説, 生命保険·傷害疾病定額保険, 有斐閣,
2010. 5. 1.
西原慎治, “日本の地震について”, 한국 비즈니스 리뷰 제4권 제2호, 2011.
小暮 雅一, 保険の數學—生保·損保·年金, 保険毎日新聞社, 2010. 5.
潘 阿憲, 保険法概説, 中央經濟社, 2010. 7.
竹賓 修 外 2인, 保険法改正の論点, 法律文化社, 2009.

Barlow Lyde and Gilbert, Insurance Law Handbook, Tottel Publishing; 4th edition. 2008.

Durukal, Erik & Sestetian, K., “Turkish Compulsory Earthquake Insurance”, Geographical Research Abstracts, Vol.11, EGU 2009-6648, EGU General Assembly, 2009.

Emeric Fischer/Peter Nash Swisher/Jeffrey Stempe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I, II (Revised Third Edition), Lexis Nexis, 2006.

James Allan Park, A System Of The Law Of Marine Insurances, The Lawbook Exchange, Ltd., 2005.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Sweet & Maxwell; 7th edition, 2007.

Kenneth S. Abraham,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Foundation Press, 2005.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Carl Heymanns, 2009.

Tom Baker, Insurance Law and Policy: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Aspen Publishers, 2003.

Yucemen, Semih,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TCIP): Contributions to Risk Awarenes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al Education, 7-8 May 2008.

Yunak, Hueseyin, An Example of Financial Protection Against Natural Disasters: TCIP, Issues Note of National Reinsurance Company, Turkey, 2005.

Bruck & Möller, VVG, 9.Aufl, De Gruyter, 2010.

Deutsch, Das neue Versicherungsvertragsrecht, VVW, 2008.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C. H. Beck, 2011.

<http://www.sonpo.or.jp/useful/insurance/jishin/>

http://www.sonpo.or.jp/webcatalog/campaign01/webt/wysiweb_win_viewer.html

<http://www.geonet.org.nz/earthquake/quakes/3652676g.html>.

<국문초록>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소비된다. 따라서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국가의 재정으로 모두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피해보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보험에 대한 논의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최근 빈발하고 그 강도 또한 작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소 등 지진으로 인한 대형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진보험의 틀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터키의 경우 지진보험의 목적에 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 지진보험이 피해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도록 일부 자기부담하게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반드시 화재보험과 같이 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는 터키의 예와 달리 동산도 지진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험가액과 손해발생액의 평가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만 한다. 뉴질랜드 지진보험의 목적은 터키에서와 같이 부동산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지진보험을 정부와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공동주도로 운영하고 지진보험을 사적인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건대, 손해보험에 관한 기존 약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진보험상 보상기준과 면책사유, 보험금지급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진에 취약한 지역, 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진보험의 목적은 부동산(주로 건물)뿐만 아니라 동산도 될 수 있지만 보험목적의 특정, 지진발생시 손해입증의 어려움,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일체성 여부는 당사자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

해두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의 가격평가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지진 등 자연재해의 보험을 완전히 임의보험계약에 맡겨둔다면 보험료 부담의 과중, 역선택의 가능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재난 보험을 임의보험 형태로 하는 예도 적지는 않으나 그 한계가 많다. 그리고 보험단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가진 계약자 집단이 있어서 이들의 사고발생위험을 평균하여 보험요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그 통계가 확률적 예측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또, 그 손해의 규모도 워낙 커서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에는 지나친 경우도 많다. 이를 극복하려면 보험료율을 개개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지 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그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지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측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실손보상을 하더라도 일정한 복구금액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장범위가 같은 다른 보험을 계약하려 하거나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중복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보험의 목적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목적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이 빈발할 수 있다. 지진보험의 면책사유는 상법 제 663조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지만, 손해보험에서의 통상적인 면책사유 중 고의·중과실 면책(exception)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담보배제사유(exclusion)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잔존물대위는 별 효용성이 없을 수 있다.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보험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진보험에 있어서 특히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지진보험의 재보험자에게는 원수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대위권 행사를 위임하

는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다만, 재보험자가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약정 즉 재보험 계약약관에서 미리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진보험 중 손해보험에서는 항상 중복보상의 문제를 염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자간에 보험계약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악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자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진 등 자연재해, 보험보상처리, 자율과 책임원리, 재보험계약, 보험사기의 억제, 강제보험, 자연재난 특약, 독립적 지진보험, 성숙한 피해보전문화의 정착

The Issue of Earthquake Insurance

Chun, Woo-Hyun*

No nations are free from the natur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 as they are rarely predictable. Regarding the large-scale and seriousness of the damage by them, we cannot overestimate the efforts to prepare against them. And victims themselves of disaster should protect from the damages and make efforts of recovering from the disaster, which is suitable to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Making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from the earthquake and other natural disasters for free is liable to let the beneficiaries negligent in preventing the damages. It can be a kind of moral hazards. If we think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as principal, we should be oriented to the solution system of making private insurance contract against the natural catastrophe like the earthquak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natural disaster such as earthquake is that the accident is not to be predicted and forecasted easily, breaking out in many insurance objects at the same time and the size of damages is bigger than any other accident. So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rs to prepare enough insurance money for the accident, so it requires the reinsurance contract.

When we encourages natural disaster's insurance such as earthquake insurance, we should make efforts to control against moral hazards or the adverse selection. Being the most desirable system in risk sharing, the insurance contract has the danger of becoming the means of fraud.

Regarding the difficulties of optional(voluntary) insurances, and strengthening the will of self-reliance, we need to compel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natural disasters in some cases. However, in the early stages of system implementation of private insurance contract, some support of governmental funding such as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is needed. And we should arrange such insurance contract first as to the companies and households backed up by the government.

There are two ways of the natural disaster insurance in South Korea. One is

* Professor, Law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additional insurance policy system and the other is independent insurance policy. Although the latter is much more desirable form, the former is inevitable now in Korea, where independent disaster insurance is hard to be activated.

In this paper, I indicated the problem of government-supporting(traditional) system and proposed the solving of restoration of the damage caused by the catastrophe through the private insurance contracts.

Thus the various ways of using intermediaries in making contracts should be taken like other contracts.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are insurance salesman, insurance agents, insurance brokers as well as homeshopping merchants.

On the other hand, in the mountainous regions,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the saving insurance contract rather than compensation insurance is needed as there is little recognition about the latter there.

And in the case of the property insurance, the system of actual compensation for damages rather than the fixed compensation is preferable, which matches the essence and character of the insurance of indemnity.

If it is allowed to afford special support to the businessmen, the small sized business should be primarily regarded on it.

Key Words :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moral hazards, private insurance contract, requiring the reinsurance, means of fraud, governmental support in funding, problem of government-supporting(traditional) system